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97
------	-----

2012. 10. 05.  
재정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2년 8월 22일

나. 제안자 : 남재경 의원(찬성자 12명)

다. 회부일자 : 2012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2년 10월 0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와 함께 시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또한 서울시 예산 운용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  
화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  
발하고, 시정에 적절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동 조례에서 공개대상을 삼고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 공개사례 대상의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를 조사할 수 있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  
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 남 중)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 공무원 및 시민 등으로부터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항이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공개하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 조사를 위해 필요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를 구성·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성과금, 사례금 지급, 포상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 및 방법(안 제2조, 안 제3조)

- 동 조례안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항이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을 사례집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이하"법")에서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시정요구와 예산 절약 등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이를 공개 대상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동 제정안은 이러한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지정하여 매년 1회 사례집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안 제4조)

- 안 제4조는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예산 절약·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의 접수 및 공개, 처리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의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법 제4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5항).

## 라. 조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심사, 조사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됨.

-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지방재정법 제48조, 법 시행령 제54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두어 예산절감 심사와 성과포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중복·유사위원회의 남설 등을 방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마. 포상 및 성과금 지급(안 제6조)

-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사례금 지급, 포상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법적근거가 충분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정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답변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이미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심사와 성과포상을 해오고 있으므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임.

## 5.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 설치된 “서울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수정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중복·유사위원회의 남설 등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97
----------	--------

제안년월일 : 2012년 10월 05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 설치된 “서울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중복·유사위원회의 남설 등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5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 및 감사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p>	<p>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p>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